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 마련〉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09호)
- 박 정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55호)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99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개 요	9
1.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9
가.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10
나. 김성원의원안	15
2. 경기북부 지역 분도 관련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18
IV.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20
1. 제정안 공통사항	20
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20
(1) 총 괄	20
1) 개 요	20
2)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27
(2) 경기북부 지역의 분도	28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30
(4) 기타 검토사항	33
나. 경기북부자치도 설치에 따른 특례 등	35
다.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40

라. 자치권 강화 관련 특례 등	47
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51
바. 감사위원회 설치 등	53
사. 보칙	62
 2.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관련 사항	64
가. 경기북부자치도의 기반 조성: 교육환경의 조성에 관한 특례	64
(1)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관련 특례(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64
(2) 국제예술고등학교 및 대학 설립·운영 특례(박정의원안 제33조·제34조)	67
나. 경기북부자치도의 기반 조성: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 특례	71
(1) 농업 등 관련 특례 (정성호의원안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박정의원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71
(2) 임업 등 관련 특례 (정성호·김용태의원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박정의원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78
다. 경기북부자치도의 기반 조성: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	81
라. 경기북부자치도의 기반 조성: 수도권 규제 특례	88
마. 보칙 (제4편)	91
 3. 김성원의원안 관련 사항	96
가. 조직특례 및 주민조례청구 관한 특례	96
나.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100
(1)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김성원의원안 제28조 및 제29조)	100
(2)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 등(김성원의원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104
(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의 시행 등(김성원의원안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	110
다.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22
(1) 각종 비용부담 및 조세 등 감면(김성원의원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122
(2) 입주기업(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김성원의원안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126
(3)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개별법 적용의 특례 (김성원의원안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129

4. 부 칙	136
가. 시행일	136
나. 선출직공직자의 선거 및 임기에 관한 특례	136
다. 지역간 상생협력기금 설치 등	142
라.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143

I. 제안경위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가. 정성호의원안

(1) 발 의 자 : 정성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5. 30.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나. 박정의의원안

(1) 발 의 자 : 박정의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5. 31.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가.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12.

다. 회부연월일 : 2024. 6. 1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가. 정성호의원안

제안이유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접경지역 및 수도권 특성으로 인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또한,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어 경기도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지역을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를 실제 분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북부의 경제·생활 공동체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 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지원과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1조).
- 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 보존 및 활용 등을 통한 평화도시조성을 위하여 규제자유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3조).
- 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둠(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 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사. 도지사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8조).

아.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처분 특례 규정을 둠(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나. 박정의원안

제안이유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었던 지역임. 그로 인해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된 상황임.

이는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나, 경기 북부 주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고, 개선되어야 할 상황임.

반면 경기 북부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 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면적은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보다 7배나 넓어 무한한 성장잠재력도 가지고 있음.

또한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으로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최적지임.

이에 본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 시킴으로써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나. 경기북부자치도 설치 및 관할구역 규정(안 제7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상·재정상 특별 지원 규정(안 제8조).

라.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

마. 경기북부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추진(안 제13조).

바.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부여 및 지원 등 자치권 강화(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주민참여 예산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자.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특례(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차.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에 관한 특례(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카.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다.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수도권 규제에 관한 특례(안 제48조).

파. 국가공기업에 업무협조 요청 규정 및 지역간 상생협력기금 설치(안 제50조 및 부칙 안 제3조).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지역임.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획일적으로 묶인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경기남부지역과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음. 이에 오랜 기간 희생해온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경기도의 분도(分道) 논의는 1992년 대선 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그리고 경기도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지역을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여 행정적 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시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오랜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7조).
- 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특별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20조).
-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21조).

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0조).

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받아 승인함(안 제37조 및 제41조).

아. 국가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자. 국가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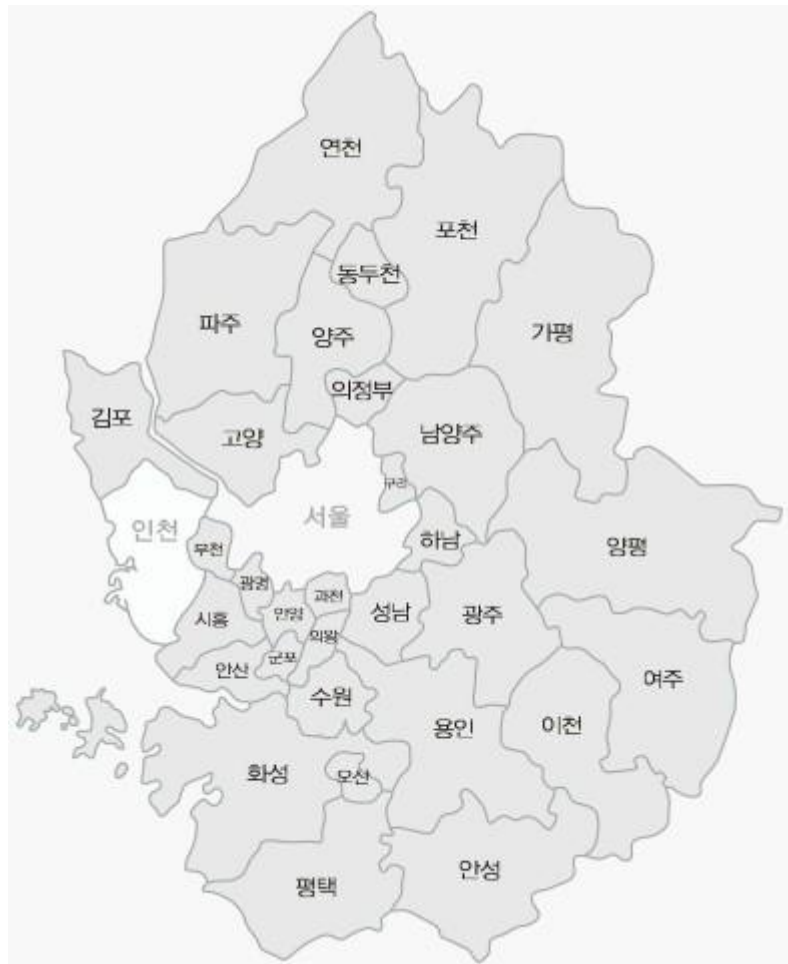
차.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농업·어업·임업·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및 제62조).

III. 개요

1.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제정안들은 경기도를 분도(分道)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부자치도”라 함)를 설치하며, 경기북부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행정상·재정상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기도 구역>



제정안들은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은 동일하나, 경기북부

자치도의 자치권 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여하려는 특례에 차이가 있음.

가.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정성호의원안은 본칙 4편·8장 총 55개 규정 및 부칙 총 9개 규정으로, 박정의원안은 본칙 4편 9장 총 56개 규정 및 부칙 총 2개 규정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정성호의원안과 박정의원안은 기본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도법」”이라 함)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도법」”이라 함)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동일함.

<정성호의원안과 박정의원안의 구성>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유사규정	
		강원	전북
<본 칙>			
제1편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1	§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3	§3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4	§4
제4조(경기북부자치도의 책무)	제4조(경기북부자치도의 책무)	§5	§5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유사규정	
		강원	전북
제5조(경기도의 책무)	제5조(경기도의 책무)	-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	§6
제2편 경기북주자치도의 설치운영		-	
제1장 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		-	
제7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	제7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	§7	§8
제8조(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제8조(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8	§9
제9조(경기북부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제9조(경기북부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9	§10
제10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10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10	§11
제2장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제11조(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11	§12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12	§13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	§13	§14
제3장 자치권 강화		-	
제1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1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14	§106
제15조(국가와 경기북부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15조(국가와 경기북부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15	§99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16	§102
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17	§08
제4장 자치재정		-	
제18조(주민참여 예산제도)	제18조(주민참여 예산제도)	§18	§107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19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19	§116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	§20	-
제5장 감사위원회		-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21	§117
제22조(감사위원장)	제22조(감사위원장)	§22	§118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23	§119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24	§120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25	§121
제26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26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26	§122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	유사규정	
		강원	전북
제2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제2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27	§123
제28조(정치운동의 금지)	제28조(정치운동의 금지)	§28	§124
제3편 경기북부자치도의 기반 조성		-	
제1장 교육환경의 조성에 관한 특례		-	
제29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29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45	§112
제30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30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46	§115
제31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31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47	§113
제32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32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48	§114
	제33조(국제예술고등학교의 설립운영)	-	§42
	제34조(대학의 설립운영)	-	-
제2장 농업 식품산업 임업 등 진흥 특례		-	
제33조(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제35조(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49	-
제3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50	-
제35조(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37조(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51	-
제36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제38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52	-
제37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39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53	-
제38조(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제40조(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54	-
제3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41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55	§59
제4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42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56	§60
제41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제43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57	§61
제3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	
제4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4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70	-
제43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제45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71	-
제44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제46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72	-
제45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제47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73	-
	제4장 수도권 규제 특례	-	
	제48조(수도권 규제 특례)	-	-
제4편 보칙		-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유사규정	
		강원	전북
제46조(사회협약)	제49조(사회협약)	§74	§109
제47조(해외협력)	제50조(해외협력)	§75	§110
제48조(국가공기업을의 협조)	제51조(국가공기업을의 협조)	§76	§111
제49조(청문)	제52조(청문)	§77	§125
제50조(감독)	제53조(감독)	§78	§126
제51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54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79	§127
제52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제55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80	§128
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81	§129
제54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83	§130
제55조(과태료)		§84	§131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2조(지역간 상생협력기금 설치 등)		
제3조(경기북부자치도지사 및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선거 등)			
제4조(경기북부자치도의회의원회에 대한 임기 등)			
제5조(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재산의 승계)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성호의원안과 박정의원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칙은 공통적으로 ①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며(안 제7조),

②경기북부자치도의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고(안 제11조),

③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지역인재 선발채용, 주민투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자치권 및 자치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며(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④자율학교 운영,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교육환경, 농업·식품산업·임업, 군사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정성호 의원안 제29조부터 제45조까지, 박정의원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추가적으로, 박정의원안은 국제예술고등학교 및 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수도권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박정의원안 제33조, 제34조 및 제48조).

다음,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새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그 임기를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김성원의원안

김성원의원안은 본칙 67개 규정 및 부칙 총 10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이라 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라 함) 및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성공업지구법」”이라 함)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김성원의원안	유사규정		김성원의원안	유사규정	
	강원 (세종)	특구 (개성)		강원 (세종)	특구 (개성)
<본 칙>					
제1조(목적)	§1	-	제15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14	-
제2조(정의)	§2	§2	제16조(조직 특례)	(§15)	-
제3조(적용범위)	§3	-	제17조(국가와 경기북부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15	-
제4조(국가의 책무)	§4	-	제1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17)	-
제5조(경기북부자치도의 책무)	§5	-	제1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18)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	-	제20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16	-
제7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	§7	-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21	-
제8조(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8	-	제22조(감사위원장)	§22	-
제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19	-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23	-
제10조(경기북부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9	-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24	-
제11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10	-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25	-
제12조(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11	-	제26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26	-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12	-	제27조(비밀유지의무)	§27	-
제14조(경기북부자치도 내	(§12)	-			

김성원의원안	유사규정		김성원의원안	유사규정	
	강원 (세종)	특구 (개성)		강원 (세종)	특구 (개성)
지역균형발전)					
제28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 구 기본계획의 수립)	-	§6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26
제29조(기본계획의 내용)	-	§7	제49조(세제 및 자금 지원)	-	§29
제30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 구의 지정 등)	-	§8	제50조(기반시설에 대한 우 선 지원)	-	§30
제31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 구 지정 시 고려사항)	-	§9	제51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	(§7)
제32조(개발계획)	-	§10	제52조(산업안전보건 및 산 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	(§8)
제33조(개발계획의 변경)	-	§11	제53조(환경보전을 위한 지 원)	-	(§9)
제34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 구 지정의 효과)	-	§12	제54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	(§10)
제35조(행위의 제한)	-	§13	제55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 구 입주기업의 대체생산시 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	(§12 의4)
제36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 구의 지정 해제)	-	§14	제56조(입주기업의 실태조사 등)	-	(§12 의6)
제3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 정)	-	§15	제57조(조세의 제정·개정 또 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20)	
제38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 무 등)	-	§16	제58조(국·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주) §165	
제39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 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	§17	제5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 례)	(평창올림픽) §68	
제40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	§18	제60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경자구역 ²⁾) §17	
제41조(실시계획의 승인)	-	§19	제61조(관광산업의 육성에 대한 지원)	(제주) §238	
제42조(실시계획 승인의 고 시 등)	-	§20	제62조(농업·어업·임업·축산 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주) §267	
제43조(인·허가 등의 의제)	-	§21	제63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접경 ³⁾)§9	
제44조(개발사업의 착수와 연기)	-	§22	제64조(주민참여 예산제도)	§18	-
제45조(토지수용 등)	-	§23	제65조(특례부여 및 지원)	§17	-
제46조(준공검사)	-	§24	제66조(해외협력)	§75	-
제47조(비용의 부담)	-	§25	제67조(벌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제3조(선거관리에 관한 특례)		

김성원의원안	유사규정		김성원의원안	유사규정	
	강원 (세종)	특구 (개정)		강원 (세종)	특구 (개정)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			제4조(선거에 관한 특례)		
제5조(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경기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예산 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김성원의원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칙 중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며,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사무의 위탁·주민투표·정원 등 조직·인사교류 및 파견·지역인재의 채용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경기북부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감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정성호의원안 및 박정의원안과 유사함(안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그 외에 차별화된 내용으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을 위한 일련의 절차 규정,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 원활한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및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안 제28조부터 제67조까지).

-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2) 「경제자유구역특별법」
 -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다음,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의원이 2026. 6. 30.까지 경기북부자치도지사,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 및 경기북부자치도의회의원을 각각 겸직하도록 하고, 경기북부자치도의 선출직 공직자 선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경기북부 지역 분도 관련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제21대 국회에는 제정안들과 유사하게 경기북부 지역을 분도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음.

<제21대 국회 경기북부 지역 분도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연번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1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51인	2020.6.10.	경기도 북부의 11개 시·군 분도, 경기북도 설치
2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0.6.10.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 분도, 경기북도 설치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민철의원 등 61인	2023.2.15.	경기도 북부의 11개 시·군 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4		최춘식의원 등 10인	2023.4.13.	
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2023.4.14.	

김민철의원과 김성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공청회⁴⁾와 두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⁵⁾를 진행한 바 있음.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심사(진술·논의)내용>

구 분	일시	주요 심사(진술·논의)내용
입법 공청회	20.12.7.	○ 경기북부는 개발과 발전의 혜택을 입지 못했음. 경기북도의 독립과 <u>경기북부에 알맞은 경제 정책</u>을 통해 경기북도의 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주민의 대표성·행정 수요·지역공동체 측면에서 경기북부의 분도가 바람직함. 경기도는 경기북부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의 공급이 불충분함. ○ <u>지리적인 공간성</u>을 고려하여 경기도를 어떻게 적절한 행정구역으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경기북도 설치에 따라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및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예상됨.
제1차 법안 소위	20.9.21.	○ 북부지역의 주민들의 불편·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어, 분도를 통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제고가 필요함. 정부가 앞장서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중첩규제 문제가 있어 따로 경기북도를 신설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전국적인 입장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u>광역 행정구역 개편</u>과 <u>관련한 중장기적인 준비</u>와 경기북도를 바라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경기북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2차 법안 소위	21.9.9.	○ 분도에 관한 경기도민 전체의 의견을 듣고, <u>공감대를 형성할 필요</u>

4) 2020. 12. 7.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

5)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0.9.21.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1.9.9.

IV.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1. 제정안 공통사항

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정성호의원안·박정의의원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김성원의의원안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총 괄

1) 개 요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	김성원의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u>경기도 북부지역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u>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의 보존 및 활용을 <u>통하여</u>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u>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u> 목적으로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u>경기도 북부지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u>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의 보존 및 활용을 <u>통한</u>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u>경기 북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실현하고</u>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 <u>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u>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u>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조성함</u> 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로 한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한다.
<u>제2조(적용범위)</u>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부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u>제2조(적용범위)</u>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u>제3조(적용범위)</u>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u>제3조(국가의 책무)</u> ①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u>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u>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경기북부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u>방안</u>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u>제3조(국가의 책무)</u> ① ~⑤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u>제4조(국가의 책무)</u> ①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u>접경지역경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u> 필요한 관계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경기북부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u>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u>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성호의원안과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u>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경기도 북부지역</u>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경기북부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경기북부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u>제4조(경기북부자치도의 책무)</u> ① 경기북부자치도는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북부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경기북부자치도의 조례(이하 “<u>도조례</u>”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	<u>제4조(경기북부자치도의 책무)</u> ①~③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같음) ④ 국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이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경기북부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u>제5조(경기북부자치도의 책무)</u> ①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② (정성호의원안 제3항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북부자치도는 경기도북부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경기도북부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경기도의 책무) 경기도는 경기도북부자치도가 정착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u>이 법</u>은 경	제5조(경기도의 책무)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② (정성호	③ 경기도북부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경기도북부자치도의 조례(이하 “<u>도조례</u>”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u>이 법에</u> 규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기북부자치도의 조직 · 운영, 중앙행정기관 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 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경기북부자치 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 정기관의 장 등의 권 한을 경기북부자치도 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 기준 및 절차 등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경 기북부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 아 해당 법령을 적용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 항을 <u>경기북부자치도</u>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	의원안과 같음)	<u>정된</u> 경기북부자치도 의 조직 운영, 특례, 규제완화, 중앙행정기 관의 권한 이양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만, 다른 법률에 경기 북부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 정기관의 장 등의 권 한을 경기북부자치도 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 기준 및 절차 등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경 기북부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 아 해당 법령을 적용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 항을 <u>경기북부자치도</u> <u>지사</u>에 해당하는 것으 로 한 경우에도 또한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다.		같다.
제7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은 <u>경기도 고양시</u> · <u>남양주시</u> · <u>파주시</u> · <u>의정부시</u> · <u>양주시</u> · <u>구리시</u> · <u>포천시</u> · <u>동두천시</u> · <u>가평군</u> · <u>연천군</u> 으로 한다. ③ 경기북부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7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 ①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②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은 <u>고양시</u> · <u>남양주시</u> · <u>파주시</u> · <u>의정부시</u> · <u>양주시</u> · <u>구리시</u> · <u>포천시</u> · <u>동두천시</u> · <u>가평군</u> · <u>연천군</u> 으로 한다. ③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7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 ①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②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은 <u>고양시</u> · <u>구리시</u> · <u>남양주시</u> · <u>동두천시</u> · <u>양주시</u> · <u>의정부시</u> · <u>파주시</u> · <u>포천시</u> · <u>가평군</u> · <u>연천군</u> 으로 한다. ③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그리고 김성원의원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정안의 목적, 적용범위, 국가의 책무 등 총칙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법」”이라 함), 「세종시법」,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제7조 및 김성원의원안 제7조는 경

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 역시 「제주도법」, 「세종시법」,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들은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변경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또는 분할)하는 문제에 해당함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6)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의 변경과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들과 같이 경기도를 분도하여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7)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청문절차로서 관계 지방의회⁸⁾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청문절차의 이행여부를 살피는 한편⁹⁾,

6)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7)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8)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조(관계 지방의회)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계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한다.

해당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설치(또는 분할) 및 구역변경의 대상이 되는 경기북부 지역의 지리적 위치, 역사, 생활권, 균형발전 필요성 등 제반사정과 각계각층의 의견, 경기북부자치도 설치에 따른 행·재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정부 차원의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이 가능하나, ①명확한 관할구역, ② 경기북부 재정 지원방안, ③비수도권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⁰⁾

2)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제정안들과는 별개로, 경기도는 2023. 9. 27.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현재 관련 사항을 검토 중에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94헌마175)가 “의견개진의 기회부여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근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9) 참고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2022.05.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쳤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2.09.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침.

10) 행정안전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전제조건으로 구역(김포시 포함여부, 구리·고양 등 서울편입 논의의 경과), 재정(북부지역 재정 악화 가능성), 파급효과(비수도권에 교부세 감소 등) 등 세 가지를 제시함.

에게 고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의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진술된 의견은 국회에 입법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기능은 하되, 입법자가 그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심사과정에서는 경기북부 지역의 분도 및 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에 관한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되, 경기 남북지역의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음.

(2) 경기북부 지역의 분도

제정안들은 경기북부 지역의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등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도하고 있음.

이처럼 제정안들이 경기도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분도(分道)하려는 것은,

①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도로·철도·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저해되어 경기 남부 지역과의 격차가 심각하고,

② 지리적 여건상 한강을 경계선으로 경기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생활권·경제권이 단절되어 있기에 생활권·경제권이 유사한 경기북부 지역을 묶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자치권을 강화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적·경제적 발전을 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경기북부 지역의 분도에 대해서는

①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라 중첩 규제로 인하여 발전이 저해된 것을 고려해 볼 때, 북부 지역의 분도가 중첩 규제의 해소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경기북부 지역은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속적 재정투입이 요구되나, 경기북부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남·북부 간 재정격차 심화 및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동력이 약해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 밖에 경기북부 지역의 분도에 맞추어 종전의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지역이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¹¹⁾ 경기도의

11) 가령 아래 인천광역시의 사례와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등) 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관할구역이 경기남부 지역에 한정되는 것에 맞추어 경기도의 명칭을 ‘경기도’로 유지할지, ‘경기남도’ 등으로 변경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도 사무를 총괄하는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소관 지역¹²⁾은 제정안들과 동일하게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임.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제정안들은 경기북부 지역에 ‘특별자치도’인 ‘경기북부자치도’를 정부의 직할로 설치하고 있음.

제정안들과 같이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함께 규정할 경우 경기북부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12)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

해당 시·도	행정(1)부시장· 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 행정(2)부지사	비고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평택시·안산시·과천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김포시·여주시·화성시·광주시·양평군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	의정부시·동두천시·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파주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가평군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	1.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의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가 총괄하며, 행정(2)부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의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경기북부 지역에 일반 ‘도’가 아닌 ‘특별자치도’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자치도의 차별성 및 특별자치도를 통한 경기북부 지역의 지원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재 전국에 설치된 특별자치시·도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네 곳임. 이때 세종특별자치시¹³⁾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특별자치도¹⁴⁾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 특별한 목적에 따라 일반적인 시·도와 달리 설치되었고, 관할구역에 시·군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와는 설치목적 및 행정체계에 차별화된 부분이 있음.

반면, 최근 1~2년 사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¹⁵⁾와 전북특별자치

13) 「세종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강원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¹⁶⁾의 경우 설치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나 일반 시·도와 비교했을 때 차별성과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례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 특별자치도의 급증으로 인해 지방자치체계에 혼란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음.¹⁷⁾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사회경제적·지리적 여건 및 경기남부 지역과의 격차 등에 비추어볼 때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상술한 우려들이 제기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유사하게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려면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할 필요성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 경기북부자치도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경기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맞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대한 결정도 필요해 보임.

참고로, 경기도는 2024. 1. 18.부터 2. 19.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16) 「전북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7)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22.12.7.) 회의록 25·26p, 28·29p,

제40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22.12.27.) 회의록 32p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하여 ‘평화누리’를 대상작으로 선정했음¹⁸⁾.

(4) 기타 검토사항

전술한 바와 같이 제정안들은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의 입법형식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개별 규정들의 경우 각 제정안에서 일부 내용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해 보임.

첫째, 목적규정과 관련하여 정성호의원안·박정의원안(안 제1조)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임.

김성원의원안(안 제1조)은 도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발전 이바지라는 궁극적인 취지는 정성호의원안·박정의원안과 유사하나, 접경지역 경제자유특구 관련 본칙 규정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목적 규정에도 반영한 차이가 있음.

또한, 국가의 책무 규정과 관련해서도 정성호의원안·박정의원안(안

18)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기도지사 보도자료, 2024.5.3.

제3조)과 김성원의원안(안 제3조)은 경기북부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성원의원안의 경우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관련 본칙 규정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국가의 책무 규정에도 반영한 차이가 있음.

둘째, 김성원의원안이 국가·경기북부자치도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성호의원안·박정의원안은 경기도의 책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북부자치도가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셋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정성호의원안·박정의원안 제6조 및 김성원의원안 제6조제2항 후단과 관련하여, 정성호의원안·박정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경기북부자치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김성원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경기북부자치도지사”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응되는 행정청은 경기북부자치도지사라는 점, 「강원도법」¹⁹⁾ 및 「전북도법」²⁰⁾등은 같은 규정에서 특별자

19) 「강원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 「전북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치도지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때 김성원의원안과 같이 “경기북부자치도지사”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경기북부자치도 설치에 따른 특례 등(정성호의원안·박정의원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김성원의원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8조(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u>중앙행정기관의 장</u> 은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기북부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 ②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8조(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u>국가는</u> <u>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u> 및 이와 연계한 <u>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u>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u> 은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하여 그 <u>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u>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

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9조(경기북부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또는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기북부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	제9조(경기북부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 ②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10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⑦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다. ③ (정성호의원안 제2항과 같음) 제10조(경기북부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 ②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11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u>시·도</u>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기북부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방의회 의원 또는 <u>도의회</u>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u>경기북부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u>경기북부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u>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u>도의</u>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방의회 의원 또는 <u>시·도의회</u>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의회 의원(이하 “<u>자치도의회 의원</u>”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u>경기북부자치도지사(이하 “자치도지사”라 한다)</u>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u>경기북부자치도의회(이하 “자치도의회”라 한다)</u>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u>시·도의</u>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기북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u>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u>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기북부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부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u>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이하 “자치도교육감”이라 한다)</u>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정안들은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함에 따라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기북부자치도를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북부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및 경기북부자치도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법」, 「세종시법」,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경기북부자치도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및 특례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규정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별 지원 및 특례의 적정성은 해당 지원 및 특례의 정책적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개별 규정들의 경우 각 제정안에서 일부 내용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해 보임.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정성호의원안·박정의원안 제8조와 김성원의원안 제8조의 경우 국가가 경기북부자치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김성원의원안의 경우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관련 본칙 규정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국가의 책무 규정에도 반영한 차이가 있음.

또한, 정성호의원안·박정의원안 제10조는 경기북부자치도지사, 경기북부자치도의회,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을 각각 도지사, 도의회, 도교육감으로 약칭하고 있으나, 김성원의원안 제11조는 이를 자치도지사, 자치도의회, 자치도교육감으로 다르게 약칭하고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정성호의원안·박정의의원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김성원의원안 제12조 및 제13조)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11조(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경기북부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u>경기북부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u> 1. 경기북부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기북부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u>제3조제3항에</u>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제12조(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경기북부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u>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개발과 경기북부발전에</u> 원활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과 같음) 2. 경기북부자치도의 행정·재정자주권 제고와 <u>제4조제3항에</u>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u>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개발과 조성 및 활용에</u>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u>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확장 및</u>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3.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u>도지사</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추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에 관한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6.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경기북부자치도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8. 경기북부자치도의 인구소멸에 대한 분석과 인구소멸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9.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10. 경기북부자치도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자치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u>자치도지사</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또는 <u>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u>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5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u>제11조제1항</u>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결과를 관	<u>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 ④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0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 ⑦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과 같음)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u>제12조제1항</u>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기북부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기북부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북부자치도는 <u>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u> 구성에 필요한 <u>규제정비</u>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기북부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② 경기북부자치도는 <u>규제정비</u>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 ⑥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경기북부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기북부자치도 설치 시 발전방안 도출 및 각종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보다 수월하게 부처 간의 협의·조율이 가능해져 경기북부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김성원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와 관련된 심의사항들은 관련 규정의 도입여부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 현재까지 출범한 특별자치시·도에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정성호의원안·박정의원안 제11조에 따라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²¹⁾.

<정성호·박정의원안 제11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6~‘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의 위촉위원 수당	20	20	20	20	20	100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수당	15	15	15	15	15	75
실무지원단 운영비	59	60	61	62	63	305
합 계	94	95	96	97	98	480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또한, 김성원의원안 제12조따라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억 6,500만원으로 추계됨²²⁾.

21)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 20명, 실무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 15명에 대하여 연 4회 회의를 하고 회당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전제하였으며,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4년 평균 운영예산(5,650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음.

22)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 20명, 실무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 12명에 대하여

<김성원의원안 제12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6~‘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의 위촉위원 수당	20	20	20	20	20	100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수당	12	12	12	12	12	60
실무지원단 운영비	59	60	61	62	63	305
합 계	91	92	93	94	95	465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다음으로, 정성호의원안·박정의원안 제13조의 경우 행정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원위원회가 규제정비, 규제개혁 방안 등에 대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경기북부자치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규제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의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²³⁾, 제정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임.

여 연 4회 회의를 하고 회당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전제하였으며,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4년 평균 운영예산(5,650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음.

23) 「강원도법」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후단생략)

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전북도법」

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후단생략)

라. 자치권 강화 관련 특례 등(정성호의원안·박정의의원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김성원의원안 제15조·제17조·제20조·제64조·제65조)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	김성원의원안
<u>제1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u>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u>제15조(국가와 경기북부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u> ① <u>도지사</u>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도조례</u>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도조례</u>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경기북부자치도 간	<u>제15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u>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과 같음) <u>제17조(국가와 경기북부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u> ① <u>자치도지사</u>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자치도조례</u>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자치도조례</u>로 정한다. ④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과 같

4. 전북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	김성원의의원안
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u>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경기북부자치도의 시장·군수는 <u>도지사</u>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	음) 제20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u>자치도지사 또는 자치도교육감은 자치도조례</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65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경기북부자치도의 시장·군수는 <u>자치도지사</u>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할 수 있다. ③ 경기북부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u>도지사</u>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도조례</u>로 정한다.	제64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u>자치도지사</u>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자치도조례</u>로 정한다.

제정안은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인사교류 및 파견에 관한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등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의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제주도법」, 「세종시법」,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에 따른 지원 및 특례 중 일부를 경기북부자치도에 적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경기북부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특례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규정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별 지원 및 특례의 적정성은 해당 지원 및 특례의 정책적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성호의원안·박정의의원안은 경기북부자치도지사, 경기북부자치도의회,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을 각각 도지사, 도의회, 도교육감으로 약칭하고 있으나, 김성원의의원안은 이를 자치도지사, 자치도의회, 자치도교육감으로 다르게 약칭하고 있어 법 문언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정성호의원안 · 박정의의원안 제19조 및 제20조, 김성원의의원안 제9조 및 제14조)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	김성원의의원안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 ① 도지사는 재정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과 같음) 제14조(경기북부자치도 내 지역균형발전) ① 자치도지사는 경기북부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도조례로 정한다.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	김성원의의원안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정안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²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경기북부자치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기북부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계정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경기북부자치도를 위한 별도 계정 설치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동반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예산 운용 측면에서 별도의 계정을 신설할 실익이 부족하며, 모든 지자체가 별도 계정 신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바. 감사위원회 설치 등 (정성호의원안·박정의의원안 제21조부터 제27조
까지, 김성원의의원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	김성원의의원안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u>감사대상 기관</u>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u>도지사</u>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u>도조례</u>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u>도지사</u>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u>도의회</u>에서, 2명은 <u>도교육감</u>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u>경기북부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관</u>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u>자치도지사</u>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③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과 같음) ④ 위원은 <u>자치도조례</u>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u>자치도지사</u>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u>자치도의회</u>에서, 2명은 <u>자치도교육감</u>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⑤ 경기북부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도조례</u>로 정한다.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u>도의회의</u> 동의를 받아 <u>도지사</u>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u>도조례</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	촉한다. ⑤·⑥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과 같음)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자치도조례</u>로 정한다.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u>자치도의회의</u> 동의를 받아 <u>자치도지사</u>가 임명한다. ②·③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과 같음)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u>자치도조례</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②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과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	김성원의의원안
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도조례</u>로 정한다.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	같음)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자치도조례</u>로 정한다.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 ③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	김성원의의원안
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u>도교육감</u>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자치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u>자치도교육감</u>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	김성원의의원안
감사담당공무원 및 경기북부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u>도지사</u>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u>도교육감</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u>도지사</u> 또는 <u>도교육감</u>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u>도지사</u>(교육·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u>자치도지사</u>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u>자치도교육감</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과 같음) ③ <u>자치도지사</u> 또는 <u>자치도교육감</u>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u>자치도지사</u>(교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	김성원의의원안
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u>도교육감</u>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u>도지사</u>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u>자치도교육감</u>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u>자치도지사</u>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의원안과 같음) 제27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90조²⁵⁾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5)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현행 「제주도법」, 「세종시법」,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에 따라 유사 특별자치시·도에 도입되어 있는 감사위원회 및 자치감사 관련 규정을 경기북부자치도에 적용하여,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자치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자치감사계획을 마련하여 자치감사를 실시하고, 변상명령·징계·문책·시정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된 결과를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또는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법」, 「세종시법」,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들과 같이 자치감사를 실시하면 경기북부자치도의 비리 및 비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여 보다 법령에 부합하는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일부 개별 규정들의 경우 각 제정안에서 일부 내용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21조에서 감사대상 기관을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정성호 의원안·박정의원안은 ‘감사대상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김성원의원안은 ‘경기북부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후 법안 심사 단계에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법」, 「전북도법」 및 「세종시법」은 '감사대상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둘째, 정성호의원안·박정의원안은 경기북부자치도지사, 경기북부자치도의회,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을 각각 도지사, 도의회, 도교육감으로 약칭하고 있으나, 김성원의원안은 이를 자치도지사, 자치도의회, 자치도교육감으로 다르게 약칭하고 있어 법 문언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제정안들에 따라 감시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감사위원장을 임명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억 5,500만원으로 추계됨²⁶⁾.

26)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사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경우 2024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및 사무기구의운영예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감사위원장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의 연봉을 준용하여 추계하였다는 설명임.

＜ 감사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6~’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감사위원회·사무기구의 설치·운영	536	547	558	570	581	2,792
감사위원장의 임명	128	130	132	135	138	663
합 계	664	677	690	705	719	3,455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사. 보칙 (정성호의원안 제47조 및 제51조, 박정의원안 제50조 및 제53조, 김성원의원안 제19조 및 제50조)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47조(해외협력) 경기북부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할 수 있다.	제50조(해외협력)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50조(해외협력)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51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제54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1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자치도지사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다.

제정안들은 경기북부자치도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및 교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북부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법」, 「세종시법」,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등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보임.

다만, 정성호의원안·박정의원안 제51조 및 김성원의원안 제19조의 경우 그 취지는 같으나 규정 방식이 상이한바, 이는 정성호의원안·박정의원안은 「제주도법」,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의 입법례를 따르고 김성원의원안은 「세종시법」의 입법례를 따랐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추후 법안심사 단계에서 조정이 필요해 보임.

2.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관련 사항

가. 경기북부자치도의 기반 조성: 교육환경의 조성에 관한 특례(제3편 제1장)

(1)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관련 특례(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제3편 경기북부자치도의 기반 조성 제1장 교육환경의 조성에 관한 특례 제29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경기북부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경기북부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29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30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	제31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31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율학교 지정·운영 권한 및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기준·내용 설정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농어촌유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경기북부자치도의 교육자치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됨.

참고로, 「제주도법」,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에도 제정안들과 같은 규정이 도입되어 있음.

(2) 국제예술고등학교 및 대학 설립·운영 특례(박정의원안 제33조·제34조)

박정의원안
제33조(국제예술고등학교의 설립·운영) ① 경기북부자치도에 국제적인 예술 전문 교육을 통해 국제적으로 재능있는 예술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예술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예술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한다. ③ 경기북부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대학의 설립·운영) ① 경기북부자치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박정의원안 제33조)

박정의원안은 경기북부자치도에 국제적으로 재능있는 예술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인 ‘국제예술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북도법」 제42조²⁷⁾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27) 「전북도법」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① 케이팝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박정의원안에 따르면 국제예술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²⁸⁾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예술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²⁹⁾에 해당하는데, 해당 학교는 현재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교육부는 박정의원안에 따른 ‘국제예술고등학교’의 설립·운영 취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예술고등학교 지정·운영을 통해 달성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박정의원안 제34조)

박정의원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18조³⁰⁾에도 불구하고

28)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3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경기북부자치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신설·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경기북부 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 현황>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시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고양시	- 동두천시 - 파주시 - 남양주시 (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 포천시 - 양주시	-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군		- 연천군	- 가평군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주요 규제현황>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정목적	인구·산업 집중에 따른 이전·정비	인구·산업 유치 및 도시개발 적정 관리	한강 수계 수질·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
규제현황	▶ 대학·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 제한 ▶ 공업지역 추가지정 제한	▶ 중·대규모 대학(수도권 내 이전 제외)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신·증설 제한	▶ 공업용지 조성 제한 (6만㎡ 초과) ▶ 대학 신설 및 이전 제한

제정안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 수도권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입학자원의 수도권 편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유도하는 동 해당 규정은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대학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가 예상되며,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경기북부자치도의 기반 조성: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 특례
(제3편 제2장)

(1) 농업 등 관련 특례(정성호의원안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박정의
원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제2장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 특례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u>제33조(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u>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도로·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 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촉진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u>제35조(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u>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다. ⑤ 도지사는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촉진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5조(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7	제36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37조(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①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자치도의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박정의원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정안들은 도지사가 경기북부자치도에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지정해제,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특례의 존속기간을 법 시행일 후 3년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강원도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강원도법」에 따른 관련 조문>

제49조(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도로·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촉진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은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촉진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1조(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강원자치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시·군 관할구역의 농지로서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적이 4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2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7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 강원자치도의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축산지구,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3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 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들은 농지와 관련된 권한이양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농지공간의 활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농지는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전국에 걸쳐 분포해 있어 경기북부자치도 내 농지에 대한 행위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점, 경기북부 지역의 경지면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례가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특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3년 논밭별 경지면적 현황>

(단위: ha)

구 분	전 국	경 기			강 원
		소 계	경기북부	경기남부	
계	1,512,145	147,503	39,238	108,265	100,226
논	763,989	77,214	16,379	60,835	30,189
밭	748,156	70,288	22,857	47,371	70,037

※ 자료: 통계청 2023 농업면적조사 바탕으로 직접 작성

(2) 입업 등 관련 특례(정성호·김용태의원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박정의원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제3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	제41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2.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제41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43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정안들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와 자연휴양림의 지정,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승인취소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으로, 「제주도법」,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전국에 산재한 산지의 통일된 기준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과 경기북부자치도의 자율적 운영 필요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련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림청은 정성호의원안 제40조제2호(박정의원안 제42조제2호)와 관련하여, 산림보호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산지관리법」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경기북부자치도의 기반 조성: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제3편제3장, 정성의원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박정의원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제3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4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4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기북부자치도 및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북부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3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경기도북부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제45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46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45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	제47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기북부자치도 또는 관할 시·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³¹⁾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강원도법」에 따른 관련 조문>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

31)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을 의미하며,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통제보호구역을 의미함. 참고로, 통제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제한 보호구역이 있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원자치도 및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1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73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시·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민간인통제선과 보호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국방과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 도입여부는 미활용군용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7조³²⁾ 등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2)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 경기북부자치도의 기반 조성: 수도권 규제 특례(박정의원안 제3편 제4장, 제48조)

박정의원안
제4장 수도권 규제 특례
제48조(수도권 규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법률에서 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적용하는 수도권의 범위에 경기북부자치도의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3호 단서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3항제1호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제2조제12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13호·제14호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제1호·제2호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의2 6. 「조세특별제한법」 제2조제1항제9호·제10호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제2항제8호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제2항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1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제24조·제29조 12. 「지방세특별제한법」 제46조, 제78조, 제100조, 제101조, 제114조 및 제152조 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② 경기북부자치도의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접경지역으로 하고, 경기북부자치도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

박정의원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과 같이 적용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 등과 같이 수도권에 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개별 법률상의 각종 제도와 관련하여, 수도권의 범위에서 경기북부자치도의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 수도권 낙후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사이의 형평성, 수도권 내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박정의원안과 같이 수도권 규제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다만,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인 점, 수도권 내 균형발전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다른 제도적 수단을 통하여서도 달성이 가능한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³³⁾의 경우 당초 적용대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하였으나, 제21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

3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려하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까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신청을 허용하였음.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의 범위는 수도권 서울과의 연계성, 인구·산업의 집중도 및 집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낙후도 등에 따른 수도권 범위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균형발전 기조와 수도권 정책에 대한 첨예한 의견대립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수도권 규제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마. 보칙 (제4편)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제4편 보칙 제46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해외협력) 경기북부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할 수 있다. 제48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경기북부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49조(사회협약)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50조(해외협력)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51조(국가공기업의 협조)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50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 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청문)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51조(감독)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54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제52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 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4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방해한 자 3. 제27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55조(과태료) ① 제50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55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정안들은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의 협조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법」,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을 참고한 것으로 경기북부자치도 설치에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 검토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정성호의원안 제49조 및 박정의원안 제52조는 (농촌활력)촉진 지구의 지정해제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의 도입여부에 맞추어 청문절차의 이행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정성호의원안 제52조 및 박정의원안 제55조 중 개발부담금 관련 부분의 경우 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권한을 경기북부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³⁴⁾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셋째, 정성호의원안 제54조는 및 제55조는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은 제4장 보칙”이 아니라 “제5장 벌칙”을 신설하여 벌칙에 두는 것이 타당해 보임.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정성호의원안 제46조 및 박정의원안 제49조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억 500만원으로 추계됨³⁵⁾.

3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35)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운영비를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사회협약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6~'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사회협약위원회의 설치·운영	39	40	41	42	43	205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적용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음.

3. 김성원의원안 관련 사항

가. 조직특례 및 주민조례청구 관한 특례(김성원의원안 제16조 및 제57조)

김성원의원안
제16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자치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자치도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북부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경기북부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김성원의원안은 경기북부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와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첫째, 안 제16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³⁶⁾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자치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기북부자치도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제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정안은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기준인건비제, 관할구역의 인구별 기구설치기준 등³⁷⁾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

36)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3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 57조는 경기북부자치도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인명부 또는 외국인대장에 등재된 자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도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함)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세종시법」³⁸⁾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³⁹⁾에 따르면 경기북부자치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8) 「세종시법」

제20조(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시조례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3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도가 설치되는 경우 경기북부자치도 내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2024년 7월 현재 인구가 약 1,360만명인 경기도의 주민조례청구 요건은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이며⁴⁰⁾, 인구가 약 100만명인 고양시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⁴¹⁾, 인구가 약 4만명인 연천군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⁴²⁾임.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40)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41)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42)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의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나.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1)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김성원의원안 제28조 및 제29조)

김성원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란 접경지역 내에서 사람·상품·자본의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가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28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3. 해당 지역 시·군의 의견 수렴 및 청취 4. 해당 지역에 인접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자치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개발의견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야 한다. 1.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명칭(대국민 인지도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별칭을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의견 2.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 시기를 포함한다)과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선정에 관한 의견

김성원의원안

3.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조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의견
 4.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이외 인접지역의 역할에 대한 의견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의견
 6. 인구 유입 및 경제활동인구 증대 계획에 관한 의견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에 관한 의견
 8. 교통망 확충에 관한 의견
 9. 산업유치 계획에 관한 의견
 10.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의견
 11. 환경보전계획에 관한 의견
 12. 내·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에 관한 의견
 13.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계획에 관한 의견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9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내·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복수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구역 간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과 입주하는 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이외 인접지역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김성원의원안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접경지역 내에서 사람·상품·자본의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로 정의하면서, 도지사도 하여금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정의가 접경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김성원의원안은 「제주도법」 제2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정의(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있는 시·군으로서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지리적 여건 및 사회자본 현황이 비교적 열악한 편이므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여 사람·상품·자본의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또한,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⁴³⁾, 「평화경제특구법」⁴⁴⁾ 등 접경

4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법률과 개발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와 개별법률에 따른 제도와 차별성 확보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안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400만원으로 추계됨⁴⁵⁾.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6~'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	104	0	0	0	0	104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4) 「평화경제특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45)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경기도의 유사 계획 사례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하였음.

(2)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 등(김성원의원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김성원의원안
제30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자치도지사는 제28조의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2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치도지사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④ 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치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자치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 자치도지사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부지 선정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2. 내·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수준 4. 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또는 접근성

김성원의원안

5. 인구 유입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한 효과
6.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관련 영향 요소

제32조(개발계획) 제28조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지구(이하 “단위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위치·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 조달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10. 산업유치계획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12. 환경보전계획
 13. 내·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 관광자원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계획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김성원의원안

제33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자치도지사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이 있을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승인·변경·폐지 및 구역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7.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8.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9.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35조(행위의 제한) 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김성원의원안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자치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36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 해제) ① 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관리가 곤란한 경우

3. 입주 및 투자기업 유치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제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김성원의원안은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의 고려사항, 지정효과, 지정절차,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개발계획 수립 절차,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 규정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각종 개별 법률상 계획 수립 등 의제 효과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안 제34조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총 10개 개별법률 상 각종 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개발계획에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 등이 수립하는 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개발계획에 따라 개별 법률상의 각종 계획의 수립·변경효과가 발생하는 바, 개별 법률의 취지 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 효과의 적

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효과가 발생⁴⁶⁾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개별 조항에 대하여 관계 부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관련 규정	관계 부처	의견 및 사유
§31(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	국방부	-(수정필요)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군 작전과 관련된 영향요소 또한 고려 필요(제7호)
§32(개발계획)	국방부	-(수정필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추가 필요(제3항)
§34(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국토부	-(신중검토)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산업입지 법령에 근거한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제3호)
	국토부	-(신중검토)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허가의 의제는 신중한 검토 필요(제6호)
	문체부	-(수정필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전제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효과 부여 가능(제4호)

4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지구 지정의 효과) ① 제31조에 따라 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그 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관계 부처	의견 및 사유
	환경부	-(신중검토)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관리를 통한 수질환경 기준 유지, 침수 예방 등을 위하여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사전협의 필요(각호 외의 부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지정해제 및 구역변경 사유 및 절차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의제 부적절(제10호)

(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의 시행 등(김성원의원안 제37조
부터 제46조까지)

김성원의원안
제3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김성원의원안

③ 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내·외국인 투자의 유치능력
2.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개발계획 및 제41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김성원의원안

5.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②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과 제4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자치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도지사는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협약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약의 기준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김성원의원안

제4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30조제4항에 따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은 제30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자치도지사는 제4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치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해제·지정·승인·협의·심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

김성원의원안

- 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8.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김성원의원안

-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약과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2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2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김성원의원안

26.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해제
2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28.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0.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3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

김성원의원안

- 인 및 같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운영
3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40.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41.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요시책의 협의
 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사항 허용을 위한 관할 부대장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 허가·신고
 44.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4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4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48.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5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51.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지정
 5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 ②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치도지사는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김성원의원안

④ 제3항에 따라 자치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 등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44조(개발사업의 착수와 연기) ① 점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년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개발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개발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45조(토지수용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점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점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에 있는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42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

김성원의원안

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6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자치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치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성원의원안은 개발계획의 수립 이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착수와 연기, 준공검사 등의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인·허가의제, 토지수용 등의 실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일련의 규정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나, 각각의 규정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먼저,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김성원의원안 제43조는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 총 52개 개별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접경지역경

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양상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인 결정이 필요해 보임.

또한, 안 제43조제1항제6호와 제52호는 동일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해 보임.

다음,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김성원의원안 제45조는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4조의2⁴⁷⁾는 「토지보상법」 제4조 또는 별표의 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서 토지등을 수용·사용하려면 「토지보상법」의 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별 조항에 대하여 관계 부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47) 「공익사업법」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관계 부처	의견 및 사유
§43(인·허가 등의 의제)	법제처	-(수정필요) 「행정기본법」 규정사항과 동일사항을 개별 법에서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방부	-(수정필요) 「군사기지법」 제9조 관련 사항을 의제 시 군 작전수행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 삭제 필요(제1항제42호)
	국토부	-(신중검토) 정비사업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상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인·허가 의제 부적절(제13호)
		-(신중검토)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절차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국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의제 부적절(제36호)
		-(신중검토)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산업입지법령에 근거한 추진이 필요하며, 타 법령 의제를 통한 산단개발은 부적절(제38호)
	문체부	-(수정필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므로, 재의제 불필요(제10호 중 「관광진흥법」 제15조 관련 부분)
	산업부	-(수정필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는 국가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바,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의제 부적절(제9호 중 「전기사업법」 관련 부분)
	행안부	-(수정필요) 공유재산 사용료는 행정절차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사용료이므로, 인허가 의제와 함께 면제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제6항 중 사용료 관련 부분)
§45(토지수용)	환경부	-(신중검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성격상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의제 시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제 부적절(제40호)
	국토부	-(신중검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은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 소유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할 정도의 충분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다.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 각종 비용부담 및 조세 등 감면(김성원의원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김성원의원안
제47조(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자치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경기북부자치도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6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기북부자치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김성원의원안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기반시설설치 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9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 국가 및 경기북부자치도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내·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경기북부자치도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경기북부자치도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용수·철도·통신·전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김성원의원안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개발사업에 대한 조세·부담금 등 감면,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다만, 김성원의원안 제48조 및 제49조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각종 조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먼저, 세금 감면 등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개별법상 조세 감면 근거가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감면 근거가 직접 규정⁴⁸⁾되어야 하므로 개별법상 재량규정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조세 감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기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과 관련하여,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 및 배분이라는 개발부담금 제도 등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공익적 기여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개별법을 통한 면제·감면 특례 등으로 인해 각종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⁴⁹⁾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8)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49) 특히, 개발부담금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부과 제외 및 감면 대상 법률 및 관련 사업을 나열하고 있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안 제48조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은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산림청은 안 제48조와 관련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안 제48조 및 제49조와 관련하여, 개별법상 근거규정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요청대로 경감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없이도 세제지원 및 조세감면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입주기업(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김성원의원안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김성원의원안
제51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① 국가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지원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의 사업자로 본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성원의원안

제55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입주기업의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입주기업이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입주기업의 실태조사 등)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성원의원안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입주기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온실가스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필요한 지원, 대체생산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국회 보고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또는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관련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개성공업지구는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 조성된 공업지구로서 남한 주민이 설립하거나 투자한 현지기업 또는 투자기업⁵⁰⁾이 지구에서 각종 남북협력사업을 수행함.⁵¹⁾

「개성공업지구법」에서 현지기업 및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개별법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목적 외에 북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지리적 특성상 공업지구에도 각종 국내법에 따른 지원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개성공업지구 폐쇄 등의 사유로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현지기업 또는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반면,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는 국내 지역에 지정되어 각종 국내법이 적용됨이 명확하고, 남북관계 등 외부요인에 의해 특구 자체가 폐쇄되거나 사업이 중단될 여지는 적다고 보임.

5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30., 2010. 3. 26.>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4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1) 현재는 폐쇄된 상황임

또한,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지구의 조성·운영 주체와 지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주체가 정부(국가)로 동이하나,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경우 특구의 지정·운영 주체와 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주체가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와 국가로 상이하여 내용상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음.

이러한 개성공업지구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차별성,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주체 등을 고려할 때 「개성공업지구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규정을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안 제51조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중소기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개별법 적용의 특례(김성원의원안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김성원의원안
제58조(국·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김성원의원안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5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 하거나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의료기관의 교원·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0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 제6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및 제7조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이하 이 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과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자치도지사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등과 관련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등을 하기

김성원의원안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과건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과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관광산업의 육성에 대한 지원) ① 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의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자치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농업·어업·임업·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자치도지사는 경기북부자치도의 농업·어업·임업·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와 경기북부자치도는 제1항에 대한 사업 시행을 위해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3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개발을 시행할 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김성원의원안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자치도지사”로 본다.

③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김성원의원안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특구 내 입주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용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각종 개별법 적용의 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개별법의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참고 입법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

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단지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나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교원·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의료기관의 교원·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8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② 제주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7조(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으로 본다.

⑥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발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할 때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할 때에는 “환경부 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성원의원안에서 도입하려는 개별법 적용의 특례에 대하여는 관계
기 부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보임.

관련 규정	관계 부처	의견 및 사유
§58(국·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행안부	-(수정필요)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점, 공유재산의 보호 필요성 등 고려할 때 적절한 수정 필요
§60(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국방부	-(신중검토) 공장 및 사업 신설 또는 증설은 보호구역등의 해제 사유가 될 수 없고, 보호구역등의 해제는 군 작전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군사기지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
§63(환경영향평가 의 특례)	환경부	-(수정필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계획에 따라 특구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평가권한을 이양하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자치도시자 등이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토록하여 셀프평가 방지 및 국가사업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특구 개발계획 수립 및 지정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례의 존속기한을 두어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필요

4. 부 칙

가. 시행일

정성호의원안, 박정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안들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
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경기북부자치도 출범을 위한 경기도의 준비기간 및
후속조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행일을 설정할 필요가 있
어 보임.

나. 선출직공직자의 선거 및 임기에 관한 특례

정성호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3조(선거관리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시되는 자치도지사·자치도교육 감 및 자치도의회의원 선거의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 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경기

정성호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3조(경기북부자치도지사 및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선거 등) ① 경기북부자치도가 설치되는 경우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및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은 새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경기북부자치도의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에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준비와 실시 및 보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및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 선거의 선거관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이 경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북부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이 경우 경기북부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자치도지사의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② 자치도교육감의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③ 자치도의회의원의 선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④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

정성호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4조(경기북부자치도의회의원회에 대한 임기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경기북부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에서 선출된 경기도의회의원은 경기북부자치도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경기북부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공직선거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로 한다.	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치도지사·자치도의회의원 또는 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의회의원이 자치도지사·자치도의회의원 또는 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제8조(경기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2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치도의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치도지사를 겸직

정성호의원안	김성원의원안
	하는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자치도교육감을 겸직하는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정성호의원안과 김성원의원안은 경기북부자치도 출범 후 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 및 임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6. 6. 3.)를 통해 2026. 7. 1.부터 취임하는 선출직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은 동일하나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공백(자치도 출범일부터 26. 6. 30.까지)의 해소 방법이 상이함.

정성호의원안은 경기북부자치도 출범 후 26. 6. 30.까지를 임기로 하는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및 도교육감 선거를 별도로 실시하되, 종전의 경기도의회의원 중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은 경기북부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려는 것이고, 김성원의원안은 경

기북부자치도 출범 후 26. 6. 30.까지는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의회의원이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의회의원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음.

<선출직공직자 관련 특례 주요내용>

구 분	정성호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출범일 ~ 26. 6. 30.	(도지사, 도교육감) 새로 선출(임기: 26. 6. 30.까지) (도의회의원) 경기북부에서 선출된 경기도의회의원을 경기북부자치도의회의원으로 전환	경기도지사, 도교육감 및 의회의원이 각각 겸직
26. 7. 1. ~	제9회 지선을 통해 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의회의원 선출	

이에 대하여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출범일(시행일)에 맞추어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임.

경기북부자치도의 출범일부터 2026. 6. 30.까지 충분한 기간이 보장된다면 정성호의원안과 같이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및 도교육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경기북부자치도가 출범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2호⁵²⁾에 따라 종전의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지

⁵²⁾ 「공직선거법」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시의 선거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

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경기북부자치도지사를 새로 선출해야 함.

또한, 김성원의원안과 같이 경기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의회의원이 겸직하도록 할 경우 경기남부 지역에서 선출된 경기도의회의원까지도 경기북부자치도의회의원을 겸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경기북부자치도의 출범일부터 2026. 6. 30.까지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및 도교육감선거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비슷한 시기에 치러져 시간상·비용상 비효율적일 수 있고,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출범일을 2026. 7. 1. 이후로 미루되, 출범일에 맞추어 취임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며,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할에 관한 법률제정시 새로 선거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한다.

다. 지역간 상생협력기금 설치 등

박정의원안
제2조(지역간 상생협력기금 설치 등) ①경기북부자치도 성장의 일정 부분을 지방 소멸지역의 지역상생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전환하는 지역간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간 상생협력기금은 경기북부와 그 외 지방간 상생협력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박정의원안은 경기북부자치도 성장의 일정 부분을 지역상생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전환하는 지역간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여 경기북부와 그 외 지역간 상생협력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지역상생기금의 소관(경기북부자치도 또는 국가), 성격, 재원 및 용도 등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해 보이고, 규정의 성격상 부칙이 아닌 본칙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라.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정성호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 <u>경기도지사</u>와 제7조의 <u>경기북부자치도 관할구역</u>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5조(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경기도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은 <u>경기북부자치도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u>이 제정·시행 될 때까지는 <u>경기북부자치도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u>으로 본다. 제6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관할구역에서 경기도의 기관 및 시설에 소속된 직원(위촉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경기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학예에 관한 기관 및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u>경기북부자치도</u> 및 <u>경기북부자치도교육청</u>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관할구역에서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이 법 시행 전 <u>경기도지사</u> 및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u>경기북부자치도 관할구역</u>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5조(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정성호의원안과 같음) 제6조(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관할구역에서 경기도의 기관 및 시설에 소속된 직원(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경기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학예에 관한 기관 및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u>각 경기북부자치도</u> 및 <u>경기북부자치도교육청</u>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관할구역에서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정성호의원안	김성원의원안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지사,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관할구역에서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지사,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8조(재산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7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경기북부자치도지와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7조의 관할구역에서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경기북부자치도지와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자치도지사, 자치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관할구역에서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자치도지사, 자치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9조(예산 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경기북부자치도의 2024회계연도 예산은 종전 경기도가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회계별·예산항목별 예산액 중 경기북부자치도 관할구역에서의 2022회계연도 도세 징수액 기여비율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정성호의원안	김성원의원안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경기도”로 한다.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경기도”라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기도지사”를 “경기북부자치도지사·경기도지사”라 한다. ③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로 한다.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1)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경기도”로 한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경기도”를 각각 “경기북부자치도·경기도”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경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기도지사”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경기도”로 한다.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경기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기도지사”를 “경기북부자치도지사·경기도지사”로 한다. ③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로 한다. ④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로 한다. 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1)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경기도”로 한다. 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경기도”를 각

정성호의원안	김성원의원안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지사·경기도지사”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경기도”로 한다. ⑧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로 한다.	각 “경기북부자치도·경기도”로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경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기도지사”를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지사·경기도지사”로 한다. ⑧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경기도”로 한다. 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tr><td>244</td><td>「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td><td>접경지역경제자유구역</td></tr></table>	24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접경지역경제자유구역
24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접경지역경제자유구역		

제정안들은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조례·규칙, 직원,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재산의 승계, 다른 법률의 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법」, 「세종시법」, 「강원도법」 및 「전북도법」을 참

고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북부자치도 설치에 따라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김성원의원안은 예산 배분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경기북부자치도의 2024회계연도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정안의 의결 시점에 맞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7